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258 호 2020. 10. 15.(목)

규 칙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65호[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181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7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183호[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8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185호[하천 점용 허가 고시]..... 9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1139호[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

안 내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이동권** (인)

2020년 10월 15일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565호

울산광역시 복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복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신청) 「울산광역시 복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빈집 정비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빈집 정비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용지 사용 동의서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결정 및 통지)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빈집을 직접
정비하거나, 지원 대상자에게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그 빈집의 소유자는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철거를 완료한 후에는 법 제33조에 따라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지원 비용은 철거 완료 또는 임대계약 완료 후 지급한다.

제5조(지원 결정의 취소 및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빈집 철거 후 부지를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기간 내 건축행위, 물건적치, 매매, 임대 등으로 공공용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빈집 정비 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 내에 임대를 거부하거나 중도에 임대조건을 변경함으로써 임대계약이 파기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경우: 정비 완료 또는 지원금을 받은 후

가. 1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전부

나. 2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75

다. 3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50

라. 4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25

2. 임대하는 경우: 임대계약 완료 또는 지원금을 받은 후

가. 1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전부

나. 2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80

다. 3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60

라. 4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40

마. 5년 미만: 정비 및 지원 비용의 100분의 2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빈집 정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건축물 현황	소재지					
	용도		면적(m ²)			
	구조/층수					
	석면 유무					
신청대상 (선택)	1. 빈집 철거 후 4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동의() 2. 주거 등 용도로 정비하여 임대료 주변 시세의 70% 이하, 인상률 2퍼센트 이하로 5년 이상 임대하는데 동의() 3.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한 사유 기재 -					

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빈집의 정비 및 활용에 동의하고, 향후 사업비 외 보상비 요구 등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며,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청대상 제1호: 별지 제2호서식
2. 신청대상 제2호: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인감증명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공공용지 사용 동의서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토지 현황	지번					
	지목			면적(m ²)		
건물 현황	규모					

상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빈집 정비사업 시행 후 지역 주민의 편익을 위해 공공용지(주차장, 운동시설, 주민쉼터 등)로 무상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동의기간: 정비 완료일부터 () ※ 4년 이상

년 월 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2. 인감증명서 1부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복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제2조 ~ 제3조)
- 나.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제4조)
- 다. 지원 결정의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사항(제5조)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0 - 181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아진로 41-11	상안동 357-29	2020. 10. 15.	건축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10. 1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0 - 18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0. 10. 12.
2. 점용·사용의 목적 : 인공구조물 설치(사방시설)
3. 점용·사용의 장소 : 창평동 산37-1번지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211㎡
 - 나. 기 간
 - 영구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국가**공단
 -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로*번길 46 **해운빌딩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0 - 185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하천의 명칭

명촌천, 연암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대원에스앤피

나.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효암로 84-13(명촌동)

3. 점용 목적 및 개요

공작물의 설치(송전선로)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효문동 820번지

나. 면적 : 영구 30㎡

5. 점용 허가의 유효기간

영구 : 2020. 10. 13. ~ 2024. 12. 31.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0-1139호

울산광역시 복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 체육시설 사용료 및 할인율의 현실화 필요성으로 조례일부를 개정하고
- 호계문화체육센터 개관에 따라 운영과 관련한 체육시설물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호계문화체육센터 정의규정 신설(안 제2조제2호의4)
- 사용시간을 초과한 사용자에 대한 가산금액 조정(안 제10조제4항)
- 사용료 감면 대상 조정(안 제12조)
- 체육시설 중 호계문화체육센터 포함(안 별표 1, 별표 2)
- 체육시설 휴무일에 근로자의 날 포함(안 별표 2)
- 체육시설 사용료 및 할인율 현실화(안 별표 3)

3. 관계법령

-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9조
-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참조 :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문화체육과 (우)44248
- 전화번호 : 052-241-7342
- 팩스번호 : 052-241-7339
- E-mail : ssation@korea.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https://www.bukgu.ulsan.kr>)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붙임 1.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4. 의견서 1부.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쇠부리체육센터”를 “쇠부리체육센터, 호계문화체육센터”로 하고, 같은 조에 제2의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2의4. “호계문화체육센터”란 구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는 수영장·탁구장·헬스장 등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임대 또는 위탁한 매점·판매용품점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제7조제1항 중 “대회에 개방하여야 한다”를 “공공목적의 대회 등에 개방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같으며, 오토벨리복지센터·국민체육센터·쇠부리체육센터·호계문화체육센터 강좌에 대하여 2강좌 신청 시 사용료는 2강좌 중 사용료가 낮은 강좌의 사용료에 100분의 50을 할인 적용한다”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 임대 또는 위탁한 시설은 제외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체육진흥”을 “구 체육진흥”으로, “인정되는”을 “구청장이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12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100분의 50, 장기·인체

조직 등 기증 희망자(북구 주민에 한함) : 100분의 5”를 “100분의 50”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의 쇠부리체육센터란 다음에 호계문화체육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호계문화체육센터	호수1로 18 (창평동 386-1)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	------------------------	----------------	--

별표 2의 시설명(명칭)란의 쇠부리체육센터란 다음에 호계문화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별표의 휴무일란 중 “1월1일·설날·추석 연휴기간”을 각각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로 한다.

호계문화체육센터

별표3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생 략)</p> <p>1. 체육시설”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u>쇠부리체육센터</u>, 운동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궁도장, 정구장, 다목적미니구장, 게이트볼장 등 체육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p> <p>2. ~ 2의3. (생 략)</p> <p><u><신 설></u></p> <p>3. ~ 7. (생 략)</p> <p>8. <u>군인</u>”이란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의무경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p> <p>9. ~ 11. (생 략)</p> <p>제7조(시설의 개방)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 및 <u>대회에 개방하여야 한다.</u></p> <p>② (생 략)</p> <p>제10조(사용료 및 사용시간 산정 등)</p> <p>① <u>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시설물별로 별표 3과 같으며 오토밸리복지센터·국민체육센터·쇠부리체육센터 강좌에 대하여 2강좌 신청 시 사용료는 2강좌 중 사용료가 낮은 강좌의 사용료에 100분의 50을 할인 적용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 -----<u>쇠부리체육센터, 호계문화체육센터,</u> ----- ----- -----.</p> <p>2. ~ 2의3. (현행과 같음)</p> <p><u>2의4. “호계문화체육센터”란 구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는 수영장·탁구장·헬스장 등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임대 또는 위탁한 매점·판매용품점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u></p> <p>3. ~ 7.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9. ~ 11. (현행과 같음)</p> <p>제7조(시설의 개방) ① ----- ----- ----- <u>공공목적의 대회 등에 개방할 수 있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사용료 및 사용시간 산정 등)</p> <p>① ----- ----- ----- -----.</p>

②·③ (생략)

④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임대 또는 위탁한 시설은 제외한다.

1.·2. (생략)

3. 체육진흥을 위하여 인정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 100분의 50

4.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어린이, 군인 또는 유공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청소년(중·고등학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100분의 30

6. 오토벨리복지센터 등의 수영장 이용 20명 이상 단체 입장 시 : 100분의 20

7.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자 : 100분의 50,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 희망자(북구 주민에 한함) : 100분의 5

9. 녹색생활 확산을 위하여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사용료 감면 : 시설물 별로 따로 정함

10.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 -
- - - - - 100분의 50 - - - - -
- - - - -
- - - - - .

제12조(사용료의 감면) - - - - -
- - - - -
- - - .<삭 제>

1.·2. (현행과 같음)

3. 구 체육진흥을 - - - 구청장이 인정하는
- - - - -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삭 제>

<삭 제>

7. - - - - -
- - 100분의 50

<삭 제>

10.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별표 1]

[별표 1]

체육시설의 설치(제3조 관련)

체육시설의 설치(제3조 관련)

시설명(명칭)	소재지	주요시설	비고
오토밸리 복지센터	산업로 1020 (연암동 1121-2)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예식장, 뷔페 등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호계로 416-31 (신천동 578-1)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체력측정실, 스쿼시장 등	
쇠부리체육센터	천곡남로 86 (천곡동 451-4)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스쿼시장, 공연장 등	
농소운동장	호수중앙로 14 (창평동 391-1)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화장실, 관리실 등	
달천운동장	농서로 301 (달천동 75-1)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다목적구장, 족구·배구장, 체력단련장, 관리실	
효문운동장	연암17길 20-1 (연암동 265-39)	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팅장, 체력단련시설, 인공암벽 등	
양정생활체육공원	오치골2길 25 (양정동 503-1)	주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팅장, 다목적운동장, 체력단련실 등	
염포운동장	염포동 377-4	축구장, 족구·배구장, 체력단련장	
중산다목적구장	중산동 798-4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상안풋살구장	상안동 35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명촌다목적구장	명촌동 862-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효문다목적구장	연암동 267-3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가람다목적구장	화봉동 1471-4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화봉다목적구장	송내1길 15 (화봉동 445-1)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시설명(명칭)	소재지	주요시설	비고
오토밸리 복지센터	산업로 1020 (연암동 1121-2)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예식장, 뷔페 등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호계로 416-31 (신천동 578-1)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체력측정실, 스쿼시장 등	
쇠부리체육센터	천곡남로 86 (천곡동 451-4)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스쿼시장, 공연장 등	
호계문화체육센터	호수1로 18 (창평동 386-1)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등	
농소운동장	호수중앙로 14 (창평동 391-1)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화장실, 관리실 등	
달천운동장	농서로 301 (달천동 75-1)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팅장, 다목적구장, 족구·배구장, 체력단련장, 관리실	
효문운동장	연암17길 20-1 (연암동 265-39)	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팅장, 체력단련시설, 인공암벽 등	
양정생활체육공원	오치골2길 25 (양정동 503-1)	주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팅장, 다목적운동장, 체력단련실 등	
염포운동장	염포동 377-4	축구장, 족구·배구장, 체력단련장	
중산다목적구장	중산동 798-4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상안풋살구장	상안동 35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명촌다목적구장	명촌동 862-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효문다목적구장	연암동 267-3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가람다목적구장	화봉동 1471-4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화봉다목적구장	송내1길 15 (화봉동 445-1)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제9조 관련)

[별표 2]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제9조 관련)

시설명(명칭)	사용시간	휴무일	비 고
오토밸리 복지센터	○ 평일 : 06:00 ~ 22: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 07:00 ~ 19:00	○ 1월1일·설날·추석 연휴기간 ○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매주 월요일 ○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시설의 경우 제외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쇠부리체육센터			
농소운동장	○ 하절기(3월~10월) ⇒ 06:00 ~ 22:00 ○ 동절기(11월~2월) ⇒ 07:00 ~ 21:00	○ 1월1일·설날·추석 연휴기간 ○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천운동장			
효문운동장			
양정생활체육공원			
염포운동장			
중산다목적구장			
상안풋살구장			
명촌다목적구장			
효문다목적구장			
가람다목적구장			
화봉다목적구장			

시설명(명칭)	사용시간	휴무일	비 고
오토밸리 복지센터	○ 평일 : 06:00 ~ 22: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 07:00 ~ 19:00	○ 1월1일, 설날·추석 연휴기간, <u>근로자의 날</u> ○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매주 월요일 ○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시설의 경우 제외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쇠부리체육센터			
<u>호계문화체육센터</u>			
농소운동장	○ 하절기(3월~10월) ⇒ 06:00 ~ 22:00 ○ 동절기(11월~2월) ⇒ 07:00 ~ 21:00	○ 1월1일, 설날·추석 연휴기간, <u>근로자의 날</u> ○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천운동장			
효문운동장			
양정생활체육공원			
염포운동장			
중산다목적구장			
상안풋살구장			
명촌다목적구장			
효문다목적구장			
가람다목적구장			
화봉다목적구장			

현 행	개 정 안																																																																																																															
<p>[별표 3]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p> <p>1. 예식장·뷔페·사진관·미용실 사용료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기준</th> <th>사 용 료</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예식장, 뷔페, 사진관, 미용실</td> <td>1회</td> <td>신청자 → 결정</td> <td>○ 자유시장 경쟁체제 → 신청자가 사용료 결정</td> </tr> </tbody> </table> <p>2. 체육관·전시실 사용료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rowspan="2">기준</th> <th colspan="3">사 용 료</th> <th rowspan="2">비 고</th> </tr> <tr> <th>2시간 이내</th> <th>2시간 초과 4시간 이하</th> <th>4시간 초과 8시간 이하</th> </tr> </thead> <tbody> <tr> <td>체육관</td> <td>1회</td> <td>25,000</td> <td>50,000</td> <td>100,000</td> <td></td> </tr> <tr> <td>전시실</td> <td>1일</td> <td colspan="3">50,000(8시간 기준)</td> <td></td> </tr> </tbody> </table> <p>3. 체육시설 사용료 (단위 : 원)</p> <p>1) 수영</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성 인</th> <th>청소년</th> <th>노인·어린이</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자 유</td> <td>45,000원</td> <td>40,000원</td> <td>35,000원</td> <td>월</td> </tr> <tr> <td>강 습</td> <td>55,000원</td> <td>50,000원</td> <td>45,000원</td> <td>주4회</td> </tr> <tr> <td>아쿠아로빅 강습</td> <td>55,000원</td> <td>50,000원</td> <td>45,000원</td> <td>주4회</td> </tr> </tbody> </table> <p>※ 1회 사용료(자유수영만 해당) : 성인 1인 1시간 3,500원, 어린이 등 1인 1시간 2,500원</p> <p>2) 헬스 : 청소년·성인·노인 등 자유회원 45,000원/월</p> <p>3) 탁구</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성 인</th> <th>청소년·노인·어린이</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자 유</td> <td>45,000원</td> <td>35,000원</td> <td>월</td> </tr> <tr> <td>강 습</td> <td>50,000원</td> <td>45,000원</td> <td>주4회</td> </tr> </tbody> </table> <p>※ 1회 사용료 : 성인·청소년·노인·어린이 1인 1시간 3,000원</p> <p>4) 스쿼시</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성인·청소년·노인·어린이</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자 유</td> <td>55,000원</td> <td>월</td> </tr> <tr> <td>강 습</td> <td>75,000원</td> <td>주4회</td> </tr> </tbody> </table> <p>※ 1회 사용료 : 성인·청소년·노인·어린이 1인 1시간 5,000원</p>	구 분	기준	사 용 료	비 고	예식장, 뷔페, 사진관, 미용실	1회	신청자 → 결정	○ 자유시장 경쟁체제 → 신청자가 사용료 결정	구 분	기준	사 용 료			비 고	2시간 이내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체육관	1회	25,000	50,000	100,000		전시실	1일	50,000(8시간 기준)				구분	성 인	청소년	노인·어린이	비고	자 유	45,000원	40,000원	35,000원	월	강 습	55,000원	50,000원	45,000원	주4회	아쿠아로빅 강습	55,000원	50,000원	45,000원	주4회	구 분	성 인	청소년·노인·어린이	비고	자 유	45,000원	35,000원	월	강 습	50,000원	45,000원	주4회	구 분	성인·청소년·노인·어린이	비고	자 유	55,000원	월	강 습	75,000원	주4회	<p>[별표 3]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p> <p>1. 임대매장의 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의함</p> <p>2. 체육관 사용료 : 시간당 20,000원(냉·난방 사용 시 20,000원/시간 추가)</p> <p>3. 체육시설 사용료</p> <p>1) 수영</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성 인</th> <th>청소년</th> <th>노인·어린이</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자 유</td> <td>45,000원</td> <td>40,000원</td> <td>35,000원</td> <td>월</td> </tr> <tr> <td>강 습</td> <td>55,000원</td> <td>50,000원</td> <td>45,000원</td> <td>주4회</td> </tr> <tr> <td>아쿠아로빅 강습</td> <td>55,000원</td> <td>50,000원</td> <td>45,000원</td> <td>주4회</td> </tr> </tbody> </table> <p>※ 1회 사용료(자유수영만 해당) : 성인 1인 1시간 3,500원, 어린이 등 1인 1시간 2,500원</p> <p>2) 헬스 : 청소년·성인·노인 등 자유회원 45,000원/월</p> <p>3) 탁구</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성 인</th> <th>청소년·노인·어린이</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자 유</td> <td>45,000원</td> <td>35,000원</td> <td>월</td> </tr> <tr> <td>강 습</td> <td>50,000원</td> <td>45,000원</td> <td>주4회</td> </tr> </tbody> </table> <p>※ 1회 사용료 : 성인·청소년·노인·어린이 1인 1시간 3,000원</p> <p>4) 스쿼시</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성인·청소년·노인·어린이</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자 유</td> <td>55,000원</td> <td>월</td> </tr> <tr> <td>강 습</td> <td>75,000원</td> <td>주4회</td> </tr> </tbody> </table> <p>※ 1회 사용료 : 성인·청소년·노인·어린이 1인 1시간 5,000원</p>	구 분	성 인	청소년	노인·어린이	비고	자 유	45,000원	40,000원	35,000원	월	강 습	55,000원	50,000원	45,000원	주4회	아쿠아로빅 강습	55,000원	50,000원	45,000원	주4회	구 분	성 인	청소년·노인·어린이	비고	자 유	45,000원	35,000원	월	강 습	50,000원	45,000원	주4회	구 분	성인·청소년·노인·어린이	비고	자 유	55,000원	월	강 습	75,000원	주4회
구 분	기준	사 용 료	비 고																																																																																																													
예식장, 뷔페, 사진관, 미용실	1회	신청자 → 결정	○ 자유시장 경쟁체제 → 신청자가 사용료 결정																																																																																																													
구 분	기준	사 용 료			비 고																																																																																																											
		2시간 이내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체육관	1회	25,000	50,000	100,000																																																																																																												
전시실	1일	50,000(8시간 기준)																																																																																																														
구분	성 인	청소년	노인·어린이	비고																																																																																																												
자 유	45,000원	40,000원	35,000원	월																																																																																																												
강 습	55,000원	50,000원	45,000원	주4회																																																																																																												
아쿠아로빅 강습	55,000원	50,000원	45,000원	주4회																																																																																																												
구 분	성 인	청소년·노인·어린이	비고																																																																																																													
자 유	45,000원	35,000원	월																																																																																																													
강 습	50,000원	45,000원	주4회																																																																																																													
구 분	성인·청소년·노인·어린이	비고																																																																																																														
자 유	55,000원	월																																																																																																														
강 습	75,000원	주4회																																																																																																														
구 분	성 인	청소년	노인·어린이	비고																																																																																																												
자 유	45,000원	40,000원	35,000원	월																																																																																																												
강 습	55,000원	50,000원	45,000원	주4회																																																																																																												
아쿠아로빅 강습	55,000원	50,000원	45,000원	주4회																																																																																																												
구 분	성 인	청소년·노인·어린이	비고																																																																																																													
자 유	45,000원	35,000원	월																																																																																																													
강 습	50,000원	45,000원	주4회																																																																																																													
구 분	성인·청소년·노인·어린이	비고																																																																																																														
자 유	55,000원	월																																																																																																														
강 습	75,000원	주4회																																																																																																														
<p>그 외</p> <p>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수영장 이용 20명 이상 단체 입장 시 : 일일입장 사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9. 조례 제2조제11호에 따른 가입여성 월 사용료 100분의 1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11. 장기·인체조직동기증자 100분의 50 감면, 장기·인체조직동기증희망자^{*)} 100분의 5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2.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수강료 100분의 5감면(일일입장료 제외) 13.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p> <p>주) 장기·인체조직동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한다.</p>																																																																																																																

현 행	개 정 안																																																								
<p>2). 헬스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구 분</th> <th style="width: 80%;">기 준</th> </tr> </thead> <tbody> <tr> <td>노인, 성인, 청소년</td> <td>40,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그 외</td> <td>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8.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9. 장기·인체조직동기증자 100분의 50 감면, 장기·인체조직동기증희망자^{주)} 100분의 5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사용료 100분의 5 감면 11.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td> </tr> </tbody> </table> <p>주) 장기·인체조직동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는 울산광역시 복구 주민에 한한다.</p>	구 분	기 준	노인, 성인, 청소년	40,000	그 외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8.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9. 장기·인체조직동기증자 100분의 50 감면, 장기·인체조직동기증희망자^{주)} 100분의 5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사용료 100분의 5 감면 11.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p>5) 배드민턴</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구 분</th> <th style="width: 20%;">성 인</th> <th style="width: 20%;">청소년·노인·어린이</th> <th style="width: 40%;">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강 습</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주2회</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1회 사용료 : 성인 1인 1시간 3,000원, 어린이 등 1인 1시간 2,500원</p> <p>6) 생활체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구 분</th> <th style="width: 20%;">성 인</th> <th style="width: 20%;">청소년·노인·어린이</th> <th style="width: 40%;">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인 1시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주2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인 1시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주3회</td> </tr> </tbody> </table> <p>7) 마사구장·족구·배구장 등</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구 분</th> <th style="width: 20%;">마사 축구장</th> <th style="width: 20%;">족구·배구장</th> <th style="width: 40%;">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평 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0원/시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0원/시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야간조명 전기료 2,000원/시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토·일·공휴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8,500원/시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원/시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야간조명 전기료 2,000원/시간</td> </tr> </tbody> </table> <p>8) 운동장(인조잔디축구장)</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 분</th> <th style="width: 15%;">평 일</th> <th style="width: 15%;">토·일·공휴일</th> <th style="width: 15%;">육상트랙</th> <th style="width: 45%;">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사용료</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0원/시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55,000원/시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0원/시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야간조명 전기료 20,000원/시간</td> </tr> </tbody> </table> <p>9) 다목적 미니구장(풋살구장) 등</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구 분</th> <th style="width: 20%;">평 일</th> <th style="width: 20%;">토·일·공휴일</th> <th style="width: 40%;">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사용료</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00원/시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0원/시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야간조명 전기료 6,500원/시간</td> </tr> </tbody> </table>	구 분	성 인	청소년·노인·어린이	비 고	강 습	30,000원	25,000원	주2회	구 분	성 인	청소년·노인·어린이	비 고	1인 1시간	25,000원	20,000원	주2회	1인 1시간	30,000원	25,000원	주3회	구 분	마사 축구장	족구·배구장	비 고	평 일	6,000원/시간	4,000원/시간	야간조명 전기료 2,000원/시간	토·일·공휴일	8,500원/시간	5,000원/시간	야간조명 전기료 2,000원/시간	구 분	평 일	토·일·공휴일	육상트랙	비 고	사용료	30,000원/시간	55,000원/시간	20,000원/시간	야간조명 전기료 20,000원/시간	구 분	평 일	토·일·공휴일	비 고	사용료	15,000원/시간	20,000원/시간	야간조명 전기료 6,500원/시간
구 분	기 준																																																								
노인, 성인, 청소년	40,000																																																								
그 외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8.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9. 장기·인체조직동기증자 100분의 50 감면, 장기·인체조직동기증희망자^{주)} 100분의 5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사용료 100분의 5 감면 11.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구 분	성 인	청소년·노인·어린이	비 고																																																						
강 습	30,000원	25,000원	주2회																																																						
구 분	성 인	청소년·노인·어린이	비 고																																																						
1인 1시간	25,000원	20,000원	주2회																																																						
1인 1시간	30,000원	25,000원	주3회																																																						
구 분	마사 축구장	족구·배구장	비 고																																																						
평 일	6,000원/시간	4,000원/시간	야간조명 전기료 2,000원/시간																																																						
토·일·공휴일	8,500원/시간	5,000원/시간	야간조명 전기료 2,000원/시간																																																						
구 분	평 일	토·일·공휴일	육상트랙	비 고																																																					
사용료	30,000원/시간	55,000원/시간	20,000원/시간	야간조명 전기료 20,000원/시간																																																					
구 분	평 일	토·일·공휴일	비 고																																																						
사용료	15,000원/시간	20,000원/시간	야간조명 전기료 6,500원/시간																																																						
<p>3). 탁구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3" style="width: 15%;">구 분</th> <th rowspan="3" style="width: 25%;">월 자유회원 사용료 (강습회원)</th> <th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사 용 료</th> </tr>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30분</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1시간</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단식</th> <th style="text-align: center;">복식</th> <th style="text-align: center;">단식</th> <th style="text-align: center;">복식</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성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00(55,000/주4회)</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2,000</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3,000</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3,000</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4,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청소년, 군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35,000(50,000/주4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어린이, 노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0(45,000/주4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그 외</td> <td>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 표제시) 8.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9. 장기·인체조직동기증자 100분의 50 감면, 장기·인체조직동기증희망자^{주)} 100분의 5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사용료 100분의 5 감면(시간제 사용료 제외) 11.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td> </tr> </tbody> </table> <p>주) 장기·인체조직동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는 울산광역시 복구 주민에 한한다.</p>	구 분	월 자유회원 사용료 (강습회원)	사 용 료				30분		1시간		단식	복식	단식	복식	성인	40,000(55,000/주4회)	2,000	3,000	3,000	4,000	청소년, 군인	35,000(50,000/주4회)	어린이, 노인	30,000(45,000/주4회)	그 외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 표제시) 8.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9. 장기·인체조직동기증자 100분의 50 감면, 장기·인체조직동기증희망자^{주)} 100분의 5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사용료 100분의 5 감면(시간제 사용료 제외) 11.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구 분			월 자유회원 사용료 (강습회원)	사 용 료																																																					
				30분		1시간																																																			
	단식	복식		단식	복식																																																				
성인	40,000(55,000/주4회)	2,000	3,000	3,000	4,000																																																				
청소년, 군인	35,000(50,000/주4회)																																																								
어린이, 노인	30,000(45,000/주4회)																																																								
그 외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 표제시) 8.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9. 장기·인체조직동기증자 100분의 50 감면, 장기·인체조직동기증희망자^{주)} 100분의 5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사용료 100분의 5 감면(시간제 사용료 제외) 11.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p>4). 스쿼시 (단위 :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월 자유회원 사용료(강습회원)</th> <th>일일입장 사용료</th> </tr> </thead> <tbody> <tr> <td>성인, 청소년, 군인 어린이, 노인 구분없음</td> <td>50,000 (70,000/주4회)</td> <td>4,000</td> </tr> <tr> <td>그 외</td> <td colspan="2">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일일입장 사용료(4,000원) : 1일 1회 사용, 1시간 이내 3.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9.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10. 장기·인체조직동기증자 100분의 50 감면, 장기·인체조직동기증희망자* 100분의 5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1.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사용료 100분의 5 감면(일일입장료 제외) 12.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td> </tr> </tbody> </table> <p>주) 장기·인체조직동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한다.</p>		구 분	월 자유회원 사용료(강습회원)	일일입장 사용료	성인, 청소년, 군인 어린이, 노인 구분없음	50,000 (70,000/주4회)	4,000	그 외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일일입장 사용료(4,000원) : 1일 1회 사용, 1시간 이내 3.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9.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10. 장기·인체조직동기증자 100분의 50 감면, 장기·인체조직동기증희망자* 100분의 5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1.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사용료 100분의 5 감면(일일입장료 제외) 12.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p>10)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대상은 다음과 같다.</p> <p>가. 월 회원과 강습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하여야 한다.</p> <p>나. 월 회원과 강습회원은 1일 1회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p> <p>다. 사용료의 감면은 반드시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2조(사용료의 감면)와 아래 사항을 기준으로 감면요금을 책정하여야 한다.</p> <p>라.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0분의 50 감면 ※ 유공자 생존시 본인과 배우자 / 유공자 사망시 선 수급자만 감면한다</p> <p>마.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100분의 20 감면</p> <p>바.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수강료 100분의 5 감면</p> <p>사. 조례 제2조제11호에 따른 가임여성(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은 월 사용료 100분의 10 감면(자유수영, 강습수영, 아쿠아로빅에 한함)</p> <p>아. 북구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북구 거주자)가 인조잔디축구장 이용 시 100분의 20 감면</p> <p>자. 장기 인체조직 등 기증자(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0분의 50 감면</p> <p>차. 다자녀 카드 소지자 100분의 20 감면</p> <p>카. 북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인조잔디축구장에서 그라운드프를 할 경우 100분의 80 감면</p> <p>타. 할인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의 사용료에만 적용한다.</p> <p>파. 감면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정의 방법으로 감면을 받았을 때 사용료의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한다.</p>					
구 분	월 자유회원 사용료(강습회원)	일일입장 사용료														
성인, 청소년, 군인 어린이, 노인 구분없음	50,000 (70,000/주4회)	4,000														
그 외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일일입장 사용료(4,000원) : 1일 1회 사용, 1시간 이내 3.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9.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10. 장기·인체조직동기증자 100분의 50 감면, 장기·인체조직동기증희망자* 100분의 5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1.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사용료 100분의 5 감면(일일입장료 제외) 12.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p>5). 배드민턴 (단위 : 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월 강습회원 사용료</th> <th>일일입장 사용료(1회 1시간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성인</td> <td>25,000/주3회</td> <td>2,000</td> </tr> <tr> <td>청소년, 군인, 어린이, 노인</td> <td>20,000/주3회</td> <td>1,500</td> </tr> <tr> <td>그 외</td> <td colspan="2">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8. 장기·인체조직동기증자 100분의 50 감면, 장기·인체조직동기증희망자* 100분의 5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9.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수강료 100분의 5감면 (일일입장료 제외) 10.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td> </tr> </tbody> </table> <p>주) 장기·인체조직동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한다.</p>		구 분	월 강습회원 사용료	일일입장 사용료(1회 1시간 기준)	성인	25,000/주3회	2,000	청소년, 군인, 어린이, 노인	20,000/주3회	1,500	그 외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8. 장기·인체조직동기증자 100분의 50 감면, 장기·인체조직동기증희망자* 100분의 5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9.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수강료 100분의 5감면 (일일입장료 제외) 10.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구 분	월 강습회원 사용료	일일입장 사용료(1회 1시간 기준)														
성인	25,000/주3회	2,000														
청소년, 군인, 어린이, 노인	20,000/주3회	1,500														
그 외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8. 장기·인체조직동기증자 100분의 50 감면, 장기·인체조직동기증희망자* 100분의 5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9.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수강료 100분의 5감면 (일일입장료 제외) 10.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6. 생활체육

(단위 : 원)

구 분	주2회(1회 1시간 기준)	주3회(1회 1시간 기준)
성인	20,000	25,000
청소년·군인 어린이·노인	15,000	20,000
그 외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2. 월 사용자는 1일 한 번만 이용 가능함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8.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100분의 20감면 9. 장기·인체조직동기증자 100분의 50 감면, 장기·인체조직동기증희망자 ^{주)} 100분의 5 감면 (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0.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월 수강료 100분의 5 감면 11. 할인적용은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주) 장기·인체조직동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한다.

7. 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단위 : 원)

시 설 별	기준	사 용 료		비 고
		평일	토·일·공휴일	
마사 축구장	1시간	5,000	7,500	• 육상트랙 사용은 이용권 교부
족구·배구장	"	2,000	3,000	
육상트랙	전용사용	"	15,000	•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무료
	연습사용	"	1인당 200	
전기사용	"	1,000		

4. 공연장 사용료

1). 기본시설 사용료

시설구분	규 모	기 준	사용료(원)	
			평일	토·일요일, 공휴일
공연장	233석	1일	215,000	30% 가산
		오전	43,000	
		오후	65,000	
		야간	107,000	
※ 비 고 1. 30분 이상 1시간미만 초과시 당회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하고 1시간 이상 초과시는 다음 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2. 공연연습, 무대설비를 위한 공연장 사용 시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3.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23:00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4. 기준시간은 오전(08: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으로 한다.				

2). 부대시설 사용료

시 설 명	기준	사용료(원)	비 고
피아노	그랜드형	1회 20,000	○ 조율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어프라이트	1회 10,000	
무대시설	덧마루	1회 20,000	
	합창대	1회 20,000	
	덴싱플로어매트	1회 50,000	
음향시설	음향반사판	1회 20,000	○ 카세트 테이프 및 CD 구입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음향기본 신청시 유선마이크 2개기준이며, 추가사용시 3,000원 추가됨.
	빔프로젝트	1회 20,000	
	카세트테이프	1회 10,000	
	CD플레이어	1회 20,000	
	기본시설	1회 20,000	
	유선마이크	1개 3,000	
무대조명	무선마이크	1채널 10,000	○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한다. ○ 드라이아이스액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공연장	1회 50,000	
	드라이아이스기	1회 20,000	
	포오그머신	1회 30,000	
냉·난방	공연장	1대 10,000	무빙라이트
		1대 50,000	
		1시간	
대·소도구 및 기타 물품	1회	취득가액의 3퍼센트	

현행	개정안																																													
<p>8. 운동장(인조잔디축구장)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운동장 이용 시(시간당)</th> </tr> <tr> <th>평일(야간)</th> <th>토·일·공휴일(야간)</th> </tr> </thead> <tbody> <tr> <td>사용료</td> <td>25,000(30,000)</td> <td>50,000(60,000)</td> </tr> <tr> <td>그 외</td> <td colspan="2"> 1. 운동장 이용 시 적용 : 복귀 거주주민(주민등록상)회원 비율에 따라 감면 적용 ○ 91~100%(80%감면), 81~90%(70%감면), 71~80%(60%감면), 61~70%(50%감면), 51~60%(40%감면), 41~50%(30%감면), 31~40%(20%감면), 30% 이하(감면 없음) 2.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100분의 5감면 3. 인원수에 따라 할증 적용 ○ 100~299명(60%할증), 300~499명(70%할증), 500~999명(80%할증), 1,000~1,999명(90%할증), 2,000명 이상(100%할증) ※ “거주주민” 이란 주민등록상 체류시설사용허가 신청당일 현재 주민등록에 등재된 사람을 말한다. 4. 할인적용은 할인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td> </tr> </tbody> </table> <p>9. 다목적미니구장 등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다목적미니구장 이용 시(시간당)</th> </tr> <tr> <th>평일(야간)</th> <th>토·일·공휴일(야간)</th> </tr> </thead> <tbody> <tr> <td>사용료</td> <td>10,000(15,000)</td> <td>15,000(20,000)</td> </tr> <tr> <td>그 외</td> <td colspan="2"> 1. 예약은 신청 순으로 한다. 2. 야간은 조명시설 이용 시로 하며, 청소년(초·중·고)은 50% 할인한다. 3.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100분의 5감면 </td> </tr> </tbody> </table> <p>4. 공연장 사용료 1). 기본시설 사용료</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시설구분</th> <th rowspan="2">규모</th> <th rowspan="2">기준</th> <th colspan="2">사용료(원)</th> </tr> <tr> <th>평일</th> <th>토·일요일, 공휴일</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공연장</td> <td rowspan="4">233석</td> <td>1일</td> <td>215,000</td> <td rowspan="4">30% 가산</td> </tr> <tr> <td>오전</td> <td>43,000</td> </tr> <tr> <td>오후</td> <td>65,000</td> </tr> <tr> <td>야간</td> <td>107,000</td> </tr> <tr> <td colspan="5"> ※ 비고 1. 30분 이상 1시간미만 초과시 당회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하고 1시간 이상 초과시는 다음 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2. 공연연습, 무대설비를 위한 공연장 사용 시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3.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2300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4. 기준시간은 오전(08: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으로 한다. </td> </tr> </tbody> </table>	구분	운동장 이용 시(시간당)		평일(야간)	토·일·공휴일(야간)	사용료	25,000(30,000)	50,000(60,000)	그 외	1. 운동장 이용 시 적용 : 복귀 거주주민(주민등록상)회원 비율에 따라 감면 적용 ○ 91~100%(80%감면), 81~90%(70%감면), 71~80%(60%감면), 61~70%(50%감면), 51~60%(40%감면), 41~50%(30%감면), 31~40%(20%감면), 30% 이하(감면 없음) 2.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100분의 5감면 3. 인원수에 따라 할증 적용 ○ 100~299명(60%할증), 300~499명(70%할증), 500~999명(80%할증), 1,000~1,999명(90%할증), 2,000명 이상(100%할증) ※ “거주주민” 이란 주민등록상 체류시설사용허가 신청당일 현재 주민등록에 등재된 사람을 말한다. 4. 할인적용은 할인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구분	다목적미니구장 이용 시(시간당)		평일(야간)	토·일·공휴일(야간)	사용료	10,000(15,000)	15,000(20,000)	그 외	1. 예약은 신청 순으로 한다. 2. 야간은 조명시설 이용 시로 하며, 청소년(초·중·고)은 50% 할인한다. 3.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100분의 5감면		시설구분	규모	기준	사용료(원)		평일	토·일요일, 공휴일	공연장	233석	1일	215,000	30% 가산	오전	43,000	오후	65,000	야간	107,000	※ 비고 1. 30분 이상 1시간미만 초과시 당회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하고 1시간 이상 초과시는 다음 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2. 공연연습, 무대설비를 위한 공연장 사용 시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3.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2300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4. 기준시간은 오전(08: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으로 한다.					
구분		운동장 이용 시(시간당)																																												
	평일(야간)	토·일·공휴일(야간)																																												
사용료	25,000(30,000)	50,000(60,000)																																												
그 외	1. 운동장 이용 시 적용 : 복귀 거주주민(주민등록상)회원 비율에 따라 감면 적용 ○ 91~100%(80%감면), 81~90%(70%감면), 71~80%(60%감면), 61~70%(50%감면), 51~60%(40%감면), 41~50%(30%감면), 31~40%(20%감면), 30% 이하(감면 없음) 2.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100분의 5감면 3. 인원수에 따라 할증 적용 ○ 100~299명(60%할증), 300~499명(70%할증), 500~999명(80%할증), 1,000~1,999명(90%할증), 2,000명 이상(100%할증) ※ “거주주민” 이란 주민등록상 체류시설사용허가 신청당일 현재 주민등록에 등재된 사람을 말한다. 4. 할인적용은 할인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구분	다목적미니구장 이용 시(시간당)																																													
	평일(야간)	토·일·공휴일(야간)																																												
사용료	10,000(15,000)	15,000(20,000)																																												
그 외	1. 예약은 신청 순으로 한다. 2. 야간은 조명시설 이용 시로 하며, 청소년(초·중·고)은 50% 할인한다. 3. 그린카드 이용자에게 100분의 5감면																																													
시설구분	규모	기준	사용료(원)																																											
			평일	토·일요일, 공휴일																																										
공연장	233석	1일	215,000	30% 가산																																										
		오전	43,000																																											
		오후	65,000																																											
		야간	107,000																																											
※ 비고 1. 30분 이상 1시간미만 초과시 당회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하고 1시간 이상 초과시는 다음 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2. 공연연습, 무대설비를 위한 공연장 사용 시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3.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2300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4. 기준시간은 오전(08: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으로 한다.																																														

근거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군·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
2. 읍·면·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